GANGJIN
Web
Contents

목차

목차 2
공지사항 3
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 협조 3
첨부파일(1) 3

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 협조

작성일 2021.11.15 13:33 등록자 총무과 조회수 394

첨부파일(1) 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문(안).hwp 74 hit/ 112.0 KB 다운로드 미리보기

2022. 6. 1.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(2021. 11. 11.)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(2022. 5. 14.)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(위장전입)을 한 자는 「공직선거법」 제247조(사위등재.허위날인죄)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.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목록

COPYRIGHT ⓒ GANGJIN-GUN. ALL RIGHT RESERVED.

GANGJIN

Web Contents